#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79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박 정·이병훈·이상헌

어기구・양기대・이성만

박성준 · 전용기 · 이규민

도종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설치되어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 및 유통의 토대를 만들고, 투자 활성화 등 한국영화가 산업적 발전과 비약적 성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해왔으며, 2014년 한 차례 징 수기간 연장을 거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되었음.

2019년 한국영화산업은 역대 최고 관객 수 2억 2,668만 명, 극장시장 규모 총 1조 9,140억 원으로 세계 5위권을 기록하였으며, 자국영화점유율을 50% 이상 유지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음.

이에 향후로도 영화발전기금이 한국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#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8280호 영화 및	법률 제8280호 영화 및
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	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
제2조 (유효기간) 제25조의2의 개	제2조 (유효기간)
정규정은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	<u>2028년 12월 31일</u>
지 효력을 가진다.	